

1. 개정 이유

관광지·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관리청”)가 관광지등에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27. 공포, 2024.8.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관광지등 관리청이 물건등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긴급한 요건과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물건등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긴급한 경우 규정(안 제63조의3 신설)
 - 관리청이 반복·상습적으로 물건등을 설치 또는 방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상악화·자연재해 등으로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밖에 관리청이 물건등이 관광지등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물건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안 제63조의4 신설)
 - 제거된 물건 등의 목록, 제거사실 및 안내문 등 필요한 서식을 별지에 신설함

○ 물건등의 반환(안 제63조의5 신설)

- 제거된 물건의 반환 요청을 위한 반환 신청서 서식을 별지에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3, 제63조의4, 제6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물건 제거 요건)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69조의2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반복·상습적으로 물건등이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되어 긴급하게 물건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상악화·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관광지등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이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지등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제63조의4(제거된 물건등의 관리) ① 영 제57조의3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이란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관리 대장을 말한다.

② 영 제57조의3제3항에 따른 공고 및 안내문과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41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63조의5(물건등의 반환)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57조의4에 따라 물건등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1호의6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사진, 영상, 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거된 물건의 관리 대장

관리청:

일련 번호	품명 및 수량	제거 장소	제거 일시	보관 장소	제거 이유	제거자 성명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공고, 재공고, 안내문

관내 관광지등에 무단으로 설치·방치된 물건을 「관광진흥법」 제69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거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기한 내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거 및 보관물건:
2. 제거 장소:
3. 제거 일시:
4. 제거 이유:
5. 보관 장소:
6. 담당자 연락처:
7. 보관물건의 반환 기한·비용 및 귀속에 관한 안내

가.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물건을 찾아가지 않거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공보, 방송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공고합니다.

나. 가목에 따른 재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다. 물건이나 물건 매각·폐기 후 남은 금액을 반환받으려면 물건의 제거·운반·보관·처리 등에 든 비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의3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내야 합니다.

라. 가목에 따른 재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반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 물건 소유자	생년월일
		[] 물건 관리인	
	주소		연락처
품명			수량
형태			
설치·방치한 장소 및 시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의4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5에 따라 위 물건이나 남은 금액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귀하			
신청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신청인은 물건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사진, 영상, 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나 인수인이 해당 물건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나 인수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나 인수인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의3제3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비용을 모두 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나 인수인이 해당 물건의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증			
인수인	성명	[] 물건 소유자	생년월일
		[] 물건 관리인	
	주소		
품명		수량	
형태		남은 금액	
위의 물건 또는 남은 금액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3조의3(물건 제거 요건) 관광지</u> <u>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u> <u>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u> <u>청장(이하 “관리청” 이라 한</u> <u>다)이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u> <u>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건(이하</u> <u>“물건등” 이라 한다)을 제거할</u> <u>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u> <u>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u> <u>다.</u> <u>1. 반복 · 상습적으로 물건등이</u> <u>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되어 긴</u> <u>급하게 물건등을 제거할 필요가</u> <u>있다고 판단되는 경우</u> <u>2. 기상악화 · 자연재해 등으로</u> <u>인해 관광지등에 무단으로 설치</u> <u>또는 방치된 물건등이 안전상 위</u> <u>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u> <u>예상되는 경우</u>

